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저신용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
- 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안 제3조)

- (1) 경영개선자금 지원
-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
- (3) 경영컨설팅 지원
-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
-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다. 특례보증 (안 제4조)

- (1)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2) 지원대상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

(3) 보증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이내

라. 이차보전 (안 제5조)

(1)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시 협약에 의한 이차보전(연 3%, 2년 이내)

(2)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

마. 보증재원 (안 제6조)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체결 및 예산범위 내 출연

바. 지원중지 및 환수 (안 제7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는 사유

사. 제외대상 (안 제8조)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다.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5개 이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3.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사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8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 타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관 련 법 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